

건설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방안 연구

김영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실

e-mail : yjkim73@kict.re.kr

A Study on Computerization Method for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Supervision Company

Young-Jin Kim*

*ICT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요 약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초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였으나, 2005년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 양수·양도 및 합병 등 광역자치단체간 상호 업무협약의 관련서류의 이관이 지연되고,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편익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서론

국토해양부는 지난 1990년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절대적 수 부족과 전문기술능력이 미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였다. 1990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1].

건설감리는 감리전문회사에서 건설공사 관련 업무의 수행 시 설계, 시공 등 각 업무를 법령이나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는 지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 건설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는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함으로써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주소지 이전, 양수·양도 및 합병 등 지자체간 상호 업무협약의 관련서류의 이관이 지연되고,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수행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 편익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사용자 의견수렴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 방안 연구를 위해 국토해양부, 16개 광역지자체,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표 1> 사용자 의견수렴

구 분	사용자 의견
민원 처리	- 민원정보 입력항목 및 메뉴구성 단순화 - 민원종결 시 등록부 생성 - 민원처리현황 통계자료 생성 - 민원인의 도로명주소 적용
등록부 관리	- 타 기관으로 등록부 이관기능 필요 -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관리하는 감리원의 소속 기관 등 관련 정보 조회 - 전체 기관의 등록부 목록 조회(국토부)
행정 업무	- 행정처분 입력 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을 구분하여 처리 - 타 기관의 행정처분 내역 조회

위 표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를 위한 사용자

의견수렴 결과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감리전문회사 관련 민원은 신규 등록, 변경, 휴/폐업신고, 등록증재교부, 양도·양수신고, 법인합병신고 등 7종이다. 광역지자체는 민원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감리전문회사 관련 민원을 처리한 후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시스템에는 등록부를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정보만 입력하도록 입력항목 및 메뉴구성을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감리전문회사가 관할 광역지자체를 변경할 경우, 광역지자체에서는 감리전문회사 등록부를 등기 등 우편으로 전달하므로 이관 받는 광역지자체는 등록부가 도착할 때까지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가 없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등록부 이관기능과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기관의 등록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등록부에는 해당 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의 인원수를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감리원 변동신고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처리하므로, 협회에서 관리하는 감리원 정보를 광역지자체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3].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행정처분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되, 타 기관의 행정처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은 경고, 업무정지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록취소로 구분하고, 감리원의 행정처분은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로 구분한다. 감리전문회사의 부실벌점 관리는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서 부과하고,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므로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4].

3.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방안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는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간에 상호 업무협회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유하며, 감리전문회사 관련 정책수립 정보를 국토해양부 등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집계기능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시스템 개념도

위 그림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

타낸다.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성하며, 민원인시스템은 관련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신청, 민원처리현황 조회, 민원처리결과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민원인의 편의성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 및 실명확인서비스와 핸드폰 단문문자메시지 및 수수료 전자지불 기능 등을 연계한다. 기관시스템은 민원접수, 민원보완/협의, 허가서 작성, 등록부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2)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개략 기능흐름

위 그림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를 위한 개략적인 기능흐름을 나타낸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은 인터넷 민원신청부터 시작하지만, 서면으로 신청되는 민원은 민원접수부터 시작한다. 민원등록 및 접수대장등재와 주관부서 선정은 동일한 업무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메뉴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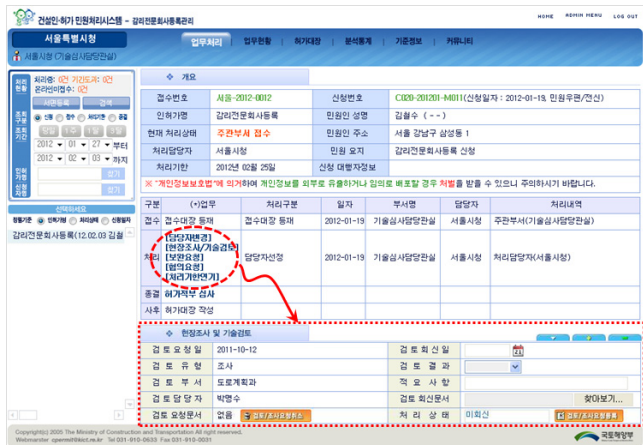
대 메뉴	중 메뉴
업무처리	업무처리
	민원접수현황
업무현황	민원처리현황
	감리전문회사행정처분현황
	감리원행정처분현황
허가대장	감리전문회사등록대장
	감리원행정처분등록
	감리원 보유현황
분석통계	민원처리현황
	행정처분분석통계
	인허가별분석통계
	신청자별분석통계

위 표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메뉴구성(안)을 나타낸다. 감리전문회사 등록 등 관련 민원처리는 업무처리 메뉴에서 처리하며, 민원처리, 행정처분현황 등 각종 현황은 업무현황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감리전문회사 및 감

리원의 행정처분과 등록내용 변경 등은 허가대장 메뉴에서 처리하며, 이에 대한 분석통계 메뉴를 제공한다.

4.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 방안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사용자 측면에서 실질적인 편의(민원처리 간편 등 편의성 증대)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관련 업무담당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현행업무를 반영하였다.



(그림 3) 감리전문회사 등록 등 민원처리기능

위 그림은 감리전문회사 등록 등 민원처리기능을 나타낸다. 민원처리기능은 등록부 관리를 위한 주요정보만 입력하고, 처리담당자변경, 현장조사/기술검토, 보완요청, 협의요청, 민원처리기한 연기, 허가적부심사 등의 업무를 화면의 전환없이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허가적부심사 이후 민원종결 시 허가대장 작성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실에서 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 감리전문회사 등록부 관리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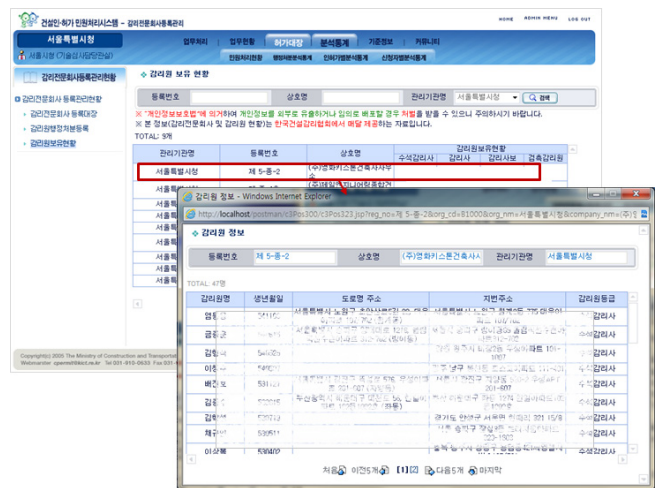
위 그림은 감리전문회사 등록부 관리기능을 나타낸다. 등록부는 법정서식을 분석하여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항

목을 그룹화하고, 행정처분 등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등록부의 모든 정보는 변경이 가능하며, 등록번호 등 주요 정보는 변경이력을 남기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5)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현황 조회기능

위 그림은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현황 조회기능을 나타낸다. 광역지자체에서 처리한 행정처분은 국토해양부 및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행정처분은 처분일자, 감리원명, (거주지)주소, 주민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등이 주요 입력정보가 되며, 타 광역지자체에서 조회할 때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는다.



(그림 6)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원 정보 조회기능

위 그림은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관리하는 감리원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다. 감리원 정보는 회사별로 그룹핑하여 광역지자체에서 등록부 관리 시 감리원 등급별로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성명,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개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감리전문회사 관련 자료를 편의에 따라 수기로 별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유

기적인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산화 방안을 도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는 인·허가기관의 대장 관리, 자료이관 등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업무효율화 이외에 민원신청/조회 기능을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가 기대된다.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시스템 적용 시 감리평가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행정처분, 실적 및 경력 등)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므로 평가 및 행정행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이문서로 관리함으로써 누락 또는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전산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5백여 건에 이르는 감리전문회사 기초정보와 행정처분 등의 추가정보 및 변경이력정보를 구축하고, 각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수립을 통해 이중입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2]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 2011.
- [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2010-1017호, 2010.
- [4] 건설산업정보센터, <http://www.kcinet.or.kr>